

# 예 산 총 칙

2012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22,418,387	12,672,552
일반회계	417,840,431	12,535,213
특별회계	4,577,956	137,339
기타특별회계	4,577,956	137,339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2,223,787	66,714
천사섬분재공원운영관리특별회계	471,069	14,132
주택사업특별회계	90,923	2,728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976,036	29,281
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235,000	7,050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581,141	17,434

제 2 조 2012년도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899,837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는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.